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2 | 1. 연구배경 |
| 3 | 2. 연구목적과 추진방향 |

II.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 | | |
|----|-------|
| 4 | 1. 미국 |
| 12 | 2. EU |
| 17 | 3. 일본 |

III. 서방의 제재대응 및 시사점

- | | |
|----|--------------------|
| 22 | 1. 서방의 제재대응 및 회피사례 |
| 29 |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 32

요약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와 영향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들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

- * 2014년 이래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정 영역에서 서구 기업의 러시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서구 기업들은 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 미국은 다양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제재시행

-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에서 시작하여 신규사업추진·외환거래 등으로 확장
- * 러시아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제재 집중

○ EU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 강화

- * 약 2단계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군수 등의 분야에 대한 직접제재 지속
- * 독일, 이탈리아 등 EU내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반발로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이거나 장기간의 제재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 일본의 경제제재는 미국 등의 제재를 따르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 * 2014년부터 단계적인 제재절차를 밟아왔으며 제재 내용은 마·EU의 안을 추종

□ 서구 기업의 제재회피 현황과 시사점

○ 서구 기업들은 제재 대상과 사업 분야를 중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 회피

- * ▲기업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서구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참여,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제재범위 이외의 영역으로 사업조정
- * 우리기업은 제재에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사업대상·영역 조정으로 분쟁소지 제거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지속과 서구기업의 대응

- 미국과 EU, 일본 등의 서방 국가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강화하고 있음.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진출을 빌미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하였으며 러시아 특정 인사 및 기업의 대외관계를 제약
 - 2018년 시리아 사태, 영국에서의 스파이 암살사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위반, 미국 대선개입 등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은 對러시아 경제제재를 강화
 - * 최근 2018년 8월에만 러시아에 대한 3차례의 추가적인 조치 시행
-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결국은 자국 경제주체의 활동을 제한
 - 경제제재에 참여한 자국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당국 기업들은 특정 러시아 기업과 특정 영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며 위반 시 정부 제재 우려
 - 기업을 포함한 서방의 경제주체들은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적 경제관계를 지속
 - * 특정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하는 동시에 주도적으로 제재프레임을 회피하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은 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아이러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2 연구목적과 추진방향

□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현황과 서구 기업의 제재회피방향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파악 및 회피사례 분석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주로 대통령령이나 법령 등을 통해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등을 분석

* 제재내용의 분석은 국가별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계속된 제재의 현황을 대상으로 함.

- 기업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주체는 제재안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제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경제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어 회피사례 분석필요

○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참여국이 아니므로 우리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재는 없으나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간접 영향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성 제기

- 한국은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제재라는 영향은 없으나, 한국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

- 서구 기업과 경제주체들의 제재회피 방안 사례를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우리기업들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투자진출에서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

II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1

미국

□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개요

- 미국의 경제제재는 당사자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이슈가 아닌, 국제 문제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대응과 단계적인 수위조절이 특징
 - * 다만, 최근 이란, 터키 등의 국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제재는 개별국가와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
 -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결된 문제이기 보다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판단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함.
 -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선도하고 기타 서구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동조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의 제재방식 전개
 -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실효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재의 내용을 강화
- 미국의 경제제재는 다양한 국가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이 특정제재대상자(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와 특정분야제재(SSI: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대상을 지정
 - * 특정 개인 및 기관 등을 지정하여 주로 자산동결 등의 제재방안을 강제하거나 금융제재 시행

- 국무부는 방위무역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s) 주도로 러시아에 대한 방산품의 수출을 통제
- 상무부는 산업보안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러시아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전략물자의 미국 수출을 규제

□ 제재 초기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2014년 3월~4월)¹⁾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60호(2014.3.6)는 제재 대상자 지정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
 -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주권·안보·안정 및 영토를 위협하는 행위,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자산에 대한 침탈행위를 하는 자를 제재대상자로 지정가능
 - 상기 행위에 대한 물질적·기술적인 지원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제재대상자로 지정가능
 - 제재대상자의 미국 내 입국 금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 행정명령 13661호(2014.3.16)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과 합병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대상을 명확화
 - 동 행정명령은 러시아가 상기 13660호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기
 - 러시아의 공직자 또는 러시아의 방산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제

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www.treasury.gov/resources-center/sanctions/Programs/Pages/ukraine.aspx>, 검색일: 2018년 8월 14일)

제재대상자를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제재대상으로 지정

- 구체적인 제재대상자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을 포함한 러시아 정치인 및 관료 7명과 크림공화국 정치인 등 총 11명 적시
- 행정명령 13662호(2014.3.20)로 러시아의 다른 산업분야에 까지 경제제재를 확산
 - 동 행정명령으로 러시아의 금융서비스, 에너지, 금속 및 광물, 엔지니어링, 군수와 관련된 분야종사자 또는 제재대상자를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제재대상으로 지정
 - 러시아 관료 및 정치인 16인과 푸틴 대통령 측근 4인 등 개인 20인과 ‘러시아 은행(Bank Russia)’이 제재 대상에 포함
- 행정부 성명(2014.4.28)으로 전략물자 수출금지 및 개인·기업에 대한 추가제재 대상 확정
 - 미국산 물품과 기술이 러시아 및 크림반도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출 및 재수출 불허
 - 러시아 정치인 및 기업인 7명과 17개 러시아 기업을 추가제재 대상에 포함

〈 미국의 초기 대러시아 경제제재 〉

- 미국의 초기 경제제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여행금지 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제재조치
→ 향후 러시아 정부의 행보에 따라 단계적 대응수위 상향의 여지 확보

□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강화 단계(2014년 7월~2017년 8월)

- 재무부와 상무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러시아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대상을 확대(2014.7.16/7.29)
 - 재무부는 가즈프롬은행(Gazprombank), 대외경제은행(VEB) 등 주요 금융기관과 로스네프츠(Rosneft), 노바텍(Novatek) 등 에너지·방산 기업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 제한
 - 재무부는 모스크바 은행(Bank of Moscow), 러시아농업은행(Rosselkhozbank), VTB은행 등 3개 금융기관과 통합조선회사(USC)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 접근 제한 및 자산 동결
 - * 7월 29일의 추가 제재는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을 계기로 시행
 - 상무부는 러시아 심해, 북극해, 셰일오일 등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나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면허 취득 의무 부과
-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을 제정하여 러시아 추가제재(2014.12.18)²⁾
 - 러시아의 위협 하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및 기타 구소련권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가즈프롬(Gazprom)이 상기 3개국 또는 NATO회원국에 대해 상당량의 천연가스공급을 축소할 경우 제재 개시
 - 러시아 군수산업 또는 에너지 산업과 금융거래를 한 기관에 대해 페널티 부과

2) S.2828-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2828>, 검색일: 2018년 8월 14일)

- 미국은 지속적인 행정명령 발동과 정부기관들의 참여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
 - 2014년 행정명령 13662호와 13685호로 러시아 방산기업과 주요 은행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크림반도 지역과의 경제 교류 금지 등 제재 확대
 - 2015년 3월에는 이전에 행해진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하였으며 7~12월에 걸쳐 제재대상 추가
 - 2016~2017년 7월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치인, 관료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상 확대
-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제정(2017.8.2)³⁾
 - 미국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제재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안 제정
 - *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여신 제공시 만기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 에너지기업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 등
 - 원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1건당 100만 달러 초과금액 투자 금지 등 신규제재 포함

〈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강화단계 〉

- 미국은 수년 간 러시아의 핵심인사 및 기업에 대한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하여 압박을 지속하였으며 일정부분 의도한 효과 부각
 - 에너지, 금융 등 주요기업의 신규 사업 추진과 외환거래에 부정적 영향

3) H.R.3364-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64/text>, 검색일: 2018년 8월 16일)

□ 대러시아 경제제재 홍보 단계(2017년 9월~현재)

○ (배경) 제재대상의 범위와 강도를 큰 폭으로 강화하기에는 국내·외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부담으로 작용

* 수년 간 계속되어 온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신규에너지 자원 개발과 금융기관의 자본시장 접근이라는 특정 영역에서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추가적인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를 노정

- 경제제재와 함께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러시아 경기주체들이 점차 경기침체에 내성을 보이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확대
- 제재기간을 거치면서 국제유가가 회복되며 러시아의 경제여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등 제재파급효과 약화
- 러시아와의 경제관계가 밀접한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제재확대에 대한 반발 및 반대여론 강화
-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강화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반작용 촉진

○ (추가제재) 기존의 제재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경제제재는 비교적 미약한 수준에서 시행

* 다만, 미 의회는 2018년 8월 향후 미국인의 러시아 국채매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제재법안의 도입을 예고

- 2018년 4월 6일 미국 정부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책임을 물어 추가제재를 단행하려 하였으나 유보 결정
- 2018년 8월 16일 북한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1개 러시아 선박서비스 기업과 대표에 대한 제재부과 등

□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합의

-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가 아니라 특정분야와 인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제재
 - 국제경제에서 러시아의 지위와 제재의 파급효과, 러시아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제재보다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경제제재를 선택
 -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 집중
 - *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그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요 산업을 겨냥하여 집중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음.
 - 장기적인 제재를 이어가지 않고 국제정세와 러시아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연간 단위의 제재 연장
- 경제제재로 인해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 및 교역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만 지속
 -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4년 약 17억 달러에서 제재이후인 2016년 약 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소폭의 반등

〈 표 1 〉 연도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금액	1,686	1,336	402	495

*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투자가 많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러시아 내 신규 투자를 크게 위축시켰음.

〈 표 2 〉 러-미 양국 간 연도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러시아 수출	11,177	9,553	8,393	9,426	10,728
미국 수출	16,718	18,594	11,490	11,066	12,673

* 자료: ITC Trademap

-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제재에도 비교적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알루미늄과 철강류 등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제재 이전 수준에 근접
- 반면,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제재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10억 달러 수준에 그쳐 제재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쳤으며 2017년에는 소폭 반등
 - * 2017년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의 품목에서의 물량확대가 원인
- 대러 제재로 수출에 영향을 받는 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 제재 지속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 이미 수년 간 제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경제가 제재에 대한 내성이 생겼으며 국제원자재 가격도 상승국면으로 수출금액 증가추세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개요

- EU의 제재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실현을 위한 수단
 -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실현을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거나 독자적으로 제 3의 국가나 정부 또는 단체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
 -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독자적인 제재로 EU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과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을 통해 이루어짐.
- EU는 러시아에 대해 약 2단계에 달하는 경제제재조치를 통해 미국과 대체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을 시행
 - EU의 1단계 경제제재는 외교적 제재 및 크림반도와 관련한 제재조치를 포함하는데, 비교적 제재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2단계 경제제재에서는 러시아의 각 산업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 시행으로 전반적인 강도 강화

□ 1단계 경제제재

- (외교적 제재) EU는 2014년 3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문제 특별회의’와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다음의 외교적 조치를 시행

- 2014년 EU와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취소
- EU와 러시아 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양자 간 논의 취소
- 러시아의 OECD 및 IEA 가입에 대한 논의 취소
- 소치 G8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참여 배재
 - * 러시아를 제외한 G7 정상회담이 2014년 6월 브뤼셀에서 개최
- (개인과 관련한 제재) EU의회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반도 침공과 불법적인 국민투표를 비난하면서 2014년 3월 17일 제재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데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EU 내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 2014년 4월 28일의 추가조치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인과 단체 목록을 포함
- (크림반도와 관련한 제재)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EU의 제재조치 시행은 2014년 6월 23일 의회결정을 통해 명시⁴⁾
 - 크림과 세바스토폴에서 생산된 상품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가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EU로의 수입을 금지
 -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 크림반도 내의 자산이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크림에 소재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투자 행위 금지

4) COUNCIL DECISION 2014/386/CFSP, 23, June, 2014.

- 특정 제품 및 기술을 크림반도 내 기업에 수출하거나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탐사 및 생산과 관련된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중개 등의 금지
- 크림반도 및 세바스토폴의 항구에 유럽 국적의 유람선이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정박할 수 없으며 관광도 금지

□ 2단계 경제제재

- 러시아에 대한 EU의 2단계 경제제재는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안을 시행
 - 2014년 7월 17일 친러 무장세력인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의 격추사건을 계기로 대러 제재 강화
 - 항공기가 추락한 장소는 친러 무장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으로 사건을 계기로 EU는 미국과 함께 대러 강경노선으로 전환
 - * EU는 1단계 제재에서 나아가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실효성이 강화된 제재안을 마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 (자본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의 주요 5개 국영은행⁵⁾, 군수회사⁶⁾, 에너지 기업⁷⁾에 대한 자본시장 접근 제한
 - 상기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30일 초과 양도성 증권(transferable securities) 및 단기 금융상품(money-market instruments)의 직·간접 매매, 중개 및 발행 지원 등 금지

5) SBERBANK, VTB BANK, GAZPROMBANK, VNESHECONOMBANK(VEB), ROSSELKHOZBANK

6) OPK OBORONPROM, UNITED AIRCRAFT CORPORATION, URALVAGONZAVOD

7) ROSNEFT, TRANSNEFT, GAZPROMNEFT

- 상기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에서의 대출 및 신용제공 금지
- (상품, 서비스 관련 제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및 군용장비 관련한 품목에 대한 제한
 - 러시아의 심해 유전탐사 및 생산, 북극 원유 탐사 및 생산, 또는 셰일오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추, 테스트, 정제 및 특수선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금지
 - * 제재 발효이전에 완료된 일부 특수선의 공급은 동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음.
 - EU의 군용품목에 속한 상품이나 장비 또는 군사목적 이외에 민간에도 사용가능한 ‘이중용도상품’의 수출 금지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합의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처음 발효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나 양국 간 경제관계의 긴밀성으로 인해 장기간의 제재 국면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 2018년 7월 5일 EU이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2019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에 합의
- 러시아와의 무역과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국과는 달리,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제재에 대한 충격이 훨씬 크게 나타남.
 - * EU는 천연가스 수입의 약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러시아는 EU의 제 3위 교역국임.

〈 표 3 〉 러시아-EU 간 연도별 교역액: 2010-2017년

구분	러시아 수출		EU 수출	
	금액(백만 유로)	성장률(%)	금액(백만 유로)	성장률(%)
2010	162,079	35.6	86,308	31.4
2011	201,329	24.2	108,587	25.8
2012	215,131	6.9	123,469	13.7
2013	206,972	-3.8	119,447	-3.3
2014	182,389	-11.9	103,271	-13.5
2015	136,394	-25.2	73,788	-28.6
2016	118,899	-12.8	72,443	-1.8
2017	145,094	22.0	86,186	19.0

* 자료: European Commission, Trade with Russia

- 러시아의 수출품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중심이나 EU의 수출은 기계, 자동차, 제약, 식품,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 EU 국가 중 러시아와 가장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러시아로의 농산물 수출이 막혀있는 이탈리아 등은 EU의 경제제재 해제를 주장
- EU의 제재로 러시아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중국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 약화와 협력기회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직면
 - * 러시아가 야말(Yamal)반도에서 추진 중인 LNG 사업의 경우, 대주주인 노바텍은 제재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
- 제재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 및 제재로 인한 EU 일부국가들의 피해가 부각되고 있어 제재강화는 물론 장기간의 제재 지속은 어려울 것

3

일본

□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개요

-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는 대체로 서방의 선례를 따르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약하고 제한적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에 따라 일본의 경제제재도 2014년 3월에 개시되었으나 서구에 비해 미약한 수준을 유지
 -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 문제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약한 경제제재를 시행하여 형식적으로 제재에 참여하는 모습
-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일본도 러시아에 대한 단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서구와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임.
 - 이후 일본정부는 단계별로 강화된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서구와 비슷한 내용의 경제제재안을 추가적으로 시행
 - 러시아는 서구의 제재에 대한 대응제재안을 내놓으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대응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경제제재 시행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는 양상

□ 경제제재의 내용

- 일본의 초기 조치는 미국 및 EU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제재로 시작되었으며 점차 제재분야 확대⁸⁾

8) Daisuke Kitade, "Considering the Effects of Japanese Sanctions against Russia," *Mitsui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July, 2016, pp.1-5.

- 2014년 3월 18일 크림반도 침공을 계기로 외무성 고시를 통해 양국 간 사증완화에 대한 협의 및 투자와 우주 분야에서 그동안 논의해오던 사안들에 대한 협력을 전면 중지
 - * 그 밖에도 군사 부문과 관련한 논의도 중단
- 4월 29일에는 러시아의 주요 요인 23명에 대한 사증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66명의 개인과 16개 기관의 자산 동결 시행
- 2014년 8월의 경제산업성 고시를 통해 對러시아 경제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따름.
 - 크림반도나 세바스토폴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경우 사전에 정부로부터 수입승인이나 수입할당을 받아야 함.
 - 크림반도나 세바스토폴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 등 우크라이나 동부의 불안정화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외국환 거래에 승인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에 따라 산업별로 구체화된 제재안이 포함되었으며 2014년 말까지 대체적으로 제재안이 마무리되었음.
 - 군사용품, 장비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 5대 금융기관(Sberbank, VTB, VEB, Gazprombank, Rusagrobank)에 대한 자본 및 유가증권의 거래 및 판매 금지
 - 크림반도나 세바스토폴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26명 및 14개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자본거래 규제

〈 표 4 〉 일본의 대러 제재 내용

제재차수 및 시기	내용	비고
1차(2014.3.18)	사증완화동결, 투자·우주·안전보장에서의 협정교섭의 동결	크림반도병합 반대
2차(2014.4.29)	23명의 사증 정지	우크라이나 동부위기
3차(2014.8.5)	크림반도, 동부의 불안정화에 관련된 지도자 및 기업의 자산동결, 수입제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4차(2014.9.24)	무기·장비·군용품 등의 수출제한, 일본국내에 있어서 러시아 주요은행(스베르뱅크, VTB, VEB, 가스프롬은행, 러시아 농업은행)의 유가증권의 판매·확산 금지	경제분야 포함
5차(2014.12.9)	지불규제(외무성고시에 의해 지정된 자에 대한 지불 등을 허가제로 한다)와 자본거래규제(예금계약, 신탁계약 및 금전의 대출계약 등을 허가제로 한다)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불안정에 직접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자료: 최태강, “아베 집권 2기 일-러 정치관계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후해서,” 슬라브학보, 제 30권, 2호, 2015, p. 411.

□ 일본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합의

- 일본의 경제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 적음.
 - 일본 경제제재의 대부분의 내용이 양국 간의 무역·투자 부문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 제재이후 양국 간의 교역이 줄어든 것은 제재의 효과가 아닌,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 표 5 〉 러-일 양국 간 연도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러시아 수출	23,653	24,776	15,741	11,273	13,822
일본 수출	13,561	10,917	6,819	6,680	7,764

* 자료: ITC Trademap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등의 원자재이며 일본의 수출은 기계 및 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제재분야가 아니므로 교역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실효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
-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음.
 - 제재를 우회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루트를 마련하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
- 제재이후에 있었던 푸틴대통령의 일본 순방 및 러·일 정상회담 등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제재가 무색한 수준의 협력확대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향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합의

〈 2016년 러·일 정상회담과 양국 협력관계 〉

- 2016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멘텀 마련
 - 2016년 5월 러시아 소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화한 사안들을 합의
 - 8개 항목 64개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이전의 러·일 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구체화
- 양국은 총 8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과거의 에너지 자원협력 및 일부 제품 수출에서 벗어난 다각적 협력관계 구축 노력
 - 8개 분야는 ▲첨단 의료시설·병원 설립, ▲도시 인프라 개선 및 도시 건설, ▲중소기업 협력 증대, ▲에너지 자원 협력 다변화, ▲러시아 산업다각화, ▲극동지역 제조업기반 구축,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스포츠·문화 교류 등
 - 세부 프로젝트를 보면, 극동협력 및 에너지, 산업다각화 분야 등을 중점협력 분야로 보고 공동 프로젝트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협력은 사실상 일본이 서방의 경제제재에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 협력에서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

III

서방의 제재대응 및 시사점

1

서방의 제재대응 및 회피사례

□ 경제제재의 영향과 역제재

○ 서구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제재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상당수가 자원개발 기업으로 러시아 기업과의 공동개발 등 신규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

– 엑손모빌(ExxonMobil)은 로스네프트와 추진 중이던 북극의 카라해(Kara Sea) 공동 탐사 중지로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⁹⁾

– 셸(Royal Dutch Shell)은 가즈프롬네프트(Gazprom Neft)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타이트 오일 개발사업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노르웨이 스탓오일(Statoil)도 러시아 내 육상광구 개발협력을 중지

– 이외에도, 프랑스의 토탈(Total) 및 미국의 자원관련 기술기업인 할리버튼(Halliburton) 등도 러시아 내 사업추진에 있어 경제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 서구 기업은 러시아와 주로 원유 등의 천연자원개발 부문과 가장 많은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도 자원개발 부문

○ 반면, 농수산, 입찰관련 등의 분야에서는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영향

9) Exxon quits some Russian joint ventures citing sanctions, 1, March,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exxon-mobil-russia-rosneft-oil/exxon-quits-some-russian-joint-ventures-citing-sanctions-idUSKCN1GC39B>, 검색일: 2018년 8월 21일)

을 받기보다는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제재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

- 러시아 정부는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 등 서구의 제재참여 국가들로부터 육류, 어패류, 과일,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주로 식료품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제한
- 상기 분야는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없더라도 제재대상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 또는 자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분야
- 기타 기계 및 장비류 등에서도 러시아 정부는 외국산 기업이 공공기관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

〈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입찰참여제한 조치 〉

-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러시아는 일부 서구산 제품 수입 금지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조치 시행
 - 2014년 7월부터 엔지니어링, 경공업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외국산 제품의 공공입찰 참여제한 조치 발표
 - * (‘14.7)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참여제한
 - * (‘14.8)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 * (‘15.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제한
 - * (‘15.2)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 * (‘15.3) 소프트웨어 제한법령 초안 검토 발표
 -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시 ‘Made in Russia’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해외 완제품 수입을 최소화

-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계기로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

격화하면서 서구산 완제품의 국내수입 및 사용보다는 자국산 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대응

□ 서방의 자국 경제제재 회피 사례

○ (제재위반 기본원칙) ▲제재대상 기업·인물과 ▲제재사업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민간 기업·조직을 제재위반 대상으로 간주

– 미국과 EU 등의 정부에서 구체적인 제재대상으로 명시한 러시아의 기업 또는 인물과의 사업 및 거래(조건 ①)

– 미국과 EU 등의 정부에서 구체적인 제재사업으로 명시한 분야(조건 ②)

– 상기의 2개 조건을 충족한 민간 기업 또는 조직을 제재위반 대상으로 간주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

○ (회피방식 ①) 기업 간 계약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 자원분야에서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어있어 기업 간 협력이 아닌 정부 간 협력으로 제재회피

–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정부 간 협력은 제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방안의 하나

– 노르웨이 석유국(NPD: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은 러시아 천연자원관리국(Rosnedra)과 공동으로 북해인근 바렌츠해(Barents Sea) 인근 지역의 지질관련 정보교환에 합의(2016.10)¹⁰⁾

10) Russia and Norway to exchange seismic data from the Barents Sea, 26, Oct. 2016, (<http://www.npd.no/en/news/News/2016/Russia-and-Norway-to-exchange-seismic-data->

- 바렌츠해는 북극해의 일부로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임.
 - 노르웨이 정부는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이 아닌 정부차원의 협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공동 자원개발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정부 간 협약체결
 - 정보교환 이후 공동탐사 등의 작업에서 추가적인 회피 수단으로서 노르웨이 공기업과 러시아 에너지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사업전개가 가능
- (회피방식 ②) 서구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
- *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략으로 공공기관이 양국의 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활용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 개발기구(NEDO)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및 전력기업인 루스하이드로(RusHydro)와 공동으로 사하 지역에 풍력발전 시스템 건설에 대한 협력의정서 체결¹¹⁾
 - 국책은행인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MOU 체결¹²⁾
 -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야말(Yamal) LNG 프로젝트에 대한 2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¹³⁾

from-the-Barents-Sea/, 검색일: 2018년 8월 23일)

11) NEDO Signed MOC with RusHydro and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s Sakha Republic, 28, Feb. 2018. (http://www.nedo.go.jp/english/whatnew_00014.htm, 검색일: 2018년 8월 2일)

12) Gazprom and JBIC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advance cooperation, 7, Sep, 2017, (<http://www.gazprom.com/press/news/2017/september/article360268>, 검색일: 2018년 8월 2일)

- 또한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와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구성하고 향후 합의 10대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투자 합의
 - * 이후 동 펀드는 러시아 제약회사에 지분투자를 하는 등 공동으로 투자프로젝트 물색 및 시행
- 국영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주체 또는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여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됨으로 입을 수 있는 리스크 회피 가능

○ (회피방식 ③)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 미국과 서구가 지정한 제재대상 금융기관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을 활용한 협력
 - * 러시아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서구의 제재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금융기관 활용
- 일본은 러시아와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서 제재대상인 러시아 은행을 통한 여신제공이 아닌, 지방은행 등의 비제재대상 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협력방안 모색

○ (회피방식 ④)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영역조정

- 미국 등 서구의 경제제재는 제재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업파트너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범위가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재우회가능
 - * 경제제재의 위반은 제재대상과 제재범위(사업)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13) Japan's JBIC to provide loan to Novatek-led Yamal LNG project, 24, Nov, 2016, (<http://www.reuters.com/article/lng-japan-jbic/japans-jbic-to-provide-loan-to-novatek-led-yamal-lng-project-idUSL4N1DP2KT>, 검색일: 2018년 8월 2일)

- 이탈리아의 공조기업인 테크노클리마(Tecnoclima)는 러시아의 로스네프트가 제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유시추 설비의 공조·난방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¹⁴⁾
- 로스네프트는 러시아의 제재대상 기업이지만 공조 및 난방과 관련한 사업은 제재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제재회피
-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륨(BP)과 Schlumberger는 로스네프트와 공동으로 육상광구 탐사에 대한 기술협약을 맺고 새로운 탐사기술개발 합의¹⁵⁾
- EU제재는 북극권 탐사에 대한 제한은 가하고 있으나 이외의 지역에 대한 사업은 제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제재위반 대상이 아님.

□ 서방 회피사례의 함의

- 러시아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업차원의 대리 협력필요성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우회방안으로 협력 지속
- 미국과 EU 등은 정부차원에서 수년 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지만, 에너지 개발기업을 중심으로 제재에 대한 우회방안 마련을 통해 협력지속
-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 등의 압력에 의해 유사한 경제제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공기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14) Rosneft and Tecnoclima S.p.A. agree on the Supply of Climatic Equipment for Drilling Rigs, 17, May, 2017, (<http://vanyeganneft.rosneft.com/press/releases/item/186665>, 검색일: 2018년 8월 23일)

15) Rosneft, BP, and Schlumberger sign technology agreements, 2, Sep. 2016,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media/press-releases/rosneft-bp-and-schlumberger-sign-sign-technology-agreements.html>, 검색일: 2018년 8월 23일)

의 경제협력을 강화

- 자국정부가 경제제재를 유지 및 확대하는 동시에 공기업·기관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형태의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
- 러시아 정부 및 기업과의 상호이해관계 구축을 통해 경제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대응
 - 서구 기업들은 러시아측과 공동의 사업추진을 통해 일방이 아닌 양방의 공동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제재에 대한 공동대응
 -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일방적인 사업진행보다는 러시아 측과의 밀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러시아와의 경제제재가 주로 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음.
 - * 다만, 러시아의 역제재로 인해 서구에서 농식품 분야의 영향은 큼.
- 많은 경우, 제재 대상이나 사업 범위가 에너지·군수·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외의 분야와 사업에 대한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서구에서 경제제재가 에너지 부문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나 무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 한국은 대러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국은 아니나 러시아 기업과의 비즈니스에서 분쟁의 여지를 줄어야 함.
 - 한국은 미국, EU,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직접 참여국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제재나 제한은 없음.
 - 다만,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경우, 서방의 제재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으로 기업의 주의 필요
 -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진행이 중단되거나 법적인 분쟁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리스크 요인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그러나, 대러 제재로 위축되어 러시아와의 사업자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음.
 - 대형 유전개발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제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구 기업들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
 - 서구 기업의 제재회피 방안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도 러시아와의 사업에서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접근방식의 전개 필요

□ 우리 기업의 제재 대응 프로세스

- (사업주체 및 대상 식별) 거래대상 러시아 기업의 제재대상 포함 여부와 우리기업의 소재지 확인
 - 러시아 거래기업이 미국이 지정하는 특정제재대상자(SDN)나 특정분야제재(SSI) 대상여부 또는 EU·일본의 거래제한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확인
 - 우리 기업의 거래 주체가 한국기업의 미국 또는 EU 내 법인일 경우 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규제대상 회피가 가능한 거래주체 간 사업을 추진하며 금융기관의 활용에 있어서도 제재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
 - * 공기업이나 국영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니나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체 여부확인 필요
- (사업영역 확인) 사업대상자와의 비즈니스 영역이 제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러시아 기업과의 사업영역이 심해 유전탐사 및 생산, 북극 원유 탐사 및 생산, 또는 셰일오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추, 테스트, 정제 및 특수선 제공 등 제재영역에 포함되는지 점검
 - 서구 국가들이 특정하는 직접적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재범위에서 제외됨.
 - 2014년 제재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제재와 무관하게 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파생되거나 확장 가능한 분야를 추진
- (우회전략 마련) 사업주체와 사업영역의 공통분모를 회피하

는 방식의 우회전략 마련 및 법률검토

- 앞선 서구기업들의 제재회피방안을 참고하여 사업주체와 사업영역이 중첩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수행과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므로 계약 및 사업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 필요

< 참고 문헌 >

- 문헌 자료 -

최태강(2015) “아베 집권 2기 일-러 정치관계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후해서.” 슬라브학보. 제 30권, 2호.

EU COUNCIL DECISION 2014/386/CFSP, 23, June, 2014.

Kitade, D. (2016) “Considering the Effects of Japanese Sanctions against Russia.” *Mitsui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 인터넷 자료 -

Exxon quits some Russian joint ventures citing sanctions, 1, March,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exxon-mobil-russia-rosne-ft-oil/exxon-quits-some-russian-joint-ventures-citing-sanctions-idUSKCN1GC39B>, (검색일: 2018.8.21)

Gazprom and JBIC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advance cooperation, 7, Sep. 2017. <http://www.gazprom.com/press/news/2017/september/article360268>, (검색일: 2018.8.2)

H.R.3364-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64/text>, (검색일: 2018.8.16)

Japan's JBIC to provide loan to Novatek-led Yamal LNG project, 24, Nov. 2016. <http://www.reuters.com/article/lng-japan-jbic/japans-jbic-to-provide-loan-to-novatek-led-yamal-lng-project-idUSL4N1DP2KT>, (검색일: 2018.8.2)

NEDO Signed MOC with RusHydro and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s Sakha Republic, 28, Feb. 2018. http://www.nedo.go.jp/english/whatnew_00014.htm, (검색일: 2018.8.2)

Rosneft and Tecnoclima S.p.A. agree on the Supply of Climatic Equipment for Drilling Rigs, 17, May. 2017, <http://vanyeganneft.rosneftcom/press/releases/item/186665>, (검색일: 2018.8.23)

Rosneft, BP, and Schlumberger sign technology agreements, 2, Sep. 2016,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media/press-releases/rosneft-bp-and-schlumberger-sign-sign-technology-agreements.ht>

ml, (검색일: 2018.8.23)

Russia and Norway to exchange seismic data from the Barents Sea, 26, Oct. 2016, (<http://www.npd.no/en/news/News/2016/Russia-and-Norway-to-exchange-seismic-data-from-the-Barents-Sea/>), (검색일: 2018.8.23)

S.2828-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https://www.congress.gov/bills/113/congress/113th-congress/senate-bill/2828>, (검색일: 2018.8.1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www.treasury.gov/resources-center/sanctions/Programs/Pages/ukraine.aspx>, (검색일: 2018.8.14)

2018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유럽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2018.1
18-002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1
18-003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18.1
18-004	한눈에 보는 수출유망국 (의료기기 ③편)	2018.1
18-005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2018.1
18-007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8.2
18-008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경쟁력 설문조사 분석	2018.3
18-009	글로벌 가공식품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3
18-010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3
18-011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패션	2018.3
18-012	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2018.4
18-013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 CES 2018에서 본 소비, 일자리, 조직문화의 혁신	2018.4
18-014	아세안 주요국 화장품 유통 및 인증제도	2018.4
18-015	메르코수르 시장이 좋아하는 한국 상품	2018.5
18-016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푸드(食)	2018.5
18-017	트럼프정부 인프라 부흥 정책에 따른 미국 P3 인프라시장 환경과 진출기회	2018.6
18-018	한-중미 FTA 분야별 활용방안	2018.6
18-019	일본 소비자의 변화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P2P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2018.6
18-020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2018.7
18-021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 - 홈&리빙(住)	2018.7
18-022	미-중 통상분쟁 현황 및 전망	2018.7
18-023	사우디 IKTVA, 아랍에미리트 ICV 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18.7
18-024	2018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18.7
18-025	2018년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2018.8
18-026	2017/18 무역사기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2018.8
18-027	NAFTA 재협상 동향 및 전망	2018.9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2018.3
18-002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2018.4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7년 대중수출 성과와 2018년 전망	2018.1
18-002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과 진출 확대 방안	2018.4
18-003	양회에 나타난 중국의 2018년 경제정책과 시사점	2018.4
18-004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정보	2018.6

□ GIP (Global Issue Paper)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2018.1
18-002	NAFTA 재협상과 멕시코 주요 산업별 영향	2018.9

□ GTR (Global Trade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7년 12월(연간) 수출 동향	2018.1
18-002	2018년 1월 수출 동향	2018.2
18-003	2018년 2월 수출 동향	2018.3
18-004	2018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8.3
18-005	2018년 3월 수출 동향	2018.4
18-006	2018년 4월 수출 동향	2018.5
18-007	2018년 5월 수출 동향	2018.6
18-008	2018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8.6
18-009	2018년 6월 수출 동향	2018.7
18-010	2018년 7월 수출 동향	2018.8
18-011	2018년 8월 수출 동향	2018.9

18-012	2018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8.9
--------	------------------------	--------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글로벌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	2018.1
18-002	한눈에 보는 해외 25개국 취업정보	2018.1
18-003	월드챔프 성공사례집: 2017년 코트라 월드챔프사업 참가기업의 수출 성공스토리	2018.2
18-004	2018-2019 해외전시회 한국관 디렉토리	2018.3
18-005	2017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8.3
18-006	해외에서 더 가까이 FTA 활용을 도와주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2018.3
18-007	201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8.3
18-008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7	2018.3
18-009	2017 IP-DESK 백서	2018.3
18-010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러시아 RUSSEZ : RUSSEZ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2018.3
18-011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Russia RUSSEZ : Consulting for the Development of Russian Special Economic Zones(RUSSEZ)	2018.3
18-012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러시아 연해주 : 루스키섬 개발 전략 및 투자 유치 방안	2018.3
18-013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Russia Primorsky Krai : Russky Island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romotion Plan	2018.3
18-014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미얀마 : 미얀마 대외무역투자 증진방안	2018.3
18-015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Myanmar :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dustry,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in Myanmar	2018.3
18-016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우즈베키스탄 :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2018.3
18-017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Uzbekistan : Policy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in Uzbekistan	2018.3
18-018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이란 1 : 이란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 : OIETAI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2018.3

18-019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Iran 1 : Policy Recommendations for Capacity Building for OIETAI in Promotion of FDI to Iran	2018.3
18-020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이란 2 : 이란 ICT 연구개발센터 발전방안 수립	2018.3
18-021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Iran 2 : Securing the Me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ranian ICT R&D Center	2018.3
18-022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칠레 : 칠레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 컨설팅 및 모델링 디자인	2018.3
18-023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Chile : Consulta de Políticas sobre Telemedicina Domiciliaria y Diseño de Modelos de Telemedicina para Enfermedades Crónicas en Chile	2018.3
18-024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케냐 : 케냐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2018.3
18-025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Kenya : Policy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Plan of an Industrial Park in Kenya	2018.3
18-026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쿠바 : 쿠바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량강화	2018.3
18-027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Cuba :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ment of the Renewable Energy & Industrial Sectors in Cuba	2018.3
18-028	세계시장, 문을 열면 희망이 보인다: 온라인마케팅·무역사절단·지방지원단 특화사업 우수사례	2018.3
18-029	지사화 우수사례집: 2017 코트라 지사화사업을 통한 20개 기업의 수출 성공스토리	2018.3
18-030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2018.4
18-031	주요국별 경제통계 가이드북	2018.4
18-032	SEOUL FOOD 2018 디렉토리	2018.4
18-033	극동러시아 투자사례집	2018.4
18-034	외국인 부동산 취득안내	2018.6
18-035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지재권보호실과 함께	2018.6
18-036	글로벌 IP 이슈페이퍼	2018.6
18-037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식품편)	2018.6
18-038	2017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8.7
18-039	외국인투자 Q&A	2018.7
18-040	제13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Official Directory	2018.6
18-041	2017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2018.7
18-042	2017 KOTRA Sustainability & Human Rights Management Report	2018.7

18-043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September 2018 Edition)	2018.7
18-044	Invest Korea 2017년도 연차보고서	2018.7
18-045	SEOUL FOOD 2018 결과보고서	2018.8
18-046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가이드	2018.8
18-047	2018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8
18-048	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18.9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8.1
18-002	2018 방산·보안기업 지원 사업설명회	2018.2
18-003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연계 멕시코 KSP 에너지·바이오·IT 진출전략세미나	2018.2
18-004	바다로! 대륙으로! 시장을 넓혀라!, 아세안·인도·유라시아 진출 설명회	2018.2
18-00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 31차 수요포럼: 해외 채류시 재난 및 안전 대응 방안	2018.3
18-006	2018 UN 공공조달 플라자 (UN Procurement Plaza 2018)	2018.3
18-007	홍콩의 금융-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2018.3
18-008	미국 투자환경 설명회	2018.4
18-009	Global Project Plaza 2018	2018.4
18-010	중국 서비스 수출방법	2018.4
18-011	FTA를 활용한 중남미 진출전략 설명회	2018.4
18-012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전략 포럼	2018.5
18-013	글로벌 메가시티를 사로잡은 히트상품	2018.6
18-014	급변하는 신흥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라	2018.6
18-01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 32차 수요포럼: 해외 프로젝트 보증 및 민간보험 활용방안	2018.6
18-016	'세계로 포럼' 中企 글로벌화, 협업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찾다	2018.6
18-017	스마트혁신 홍콩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8.7
18-018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우리의 기회	2018.7
18-019	프랑스 투자환경 설명회	2018.8
18-020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 33차 수요포럼: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	2018.9

작 성 자

■ 신북방팀

박지원

Global Market Report 18-028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10월 25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신북방팀
(02-3460-3220)

I S B N | 979-11-6097-782-0 (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